

#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복지건강국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월 20일, 강만수 의원 외 22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
(2023년 2월 2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축조심사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강만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 사업 적극 시행, 장애인의 저소득·낮은 교육수준·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도 지사의 책무로 정함. (안 제3조)
-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과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경상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조영진)

### □ 제안이유 및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 이라 한다)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.

## 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▲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, ▲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, ▲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‘장애인’과 ‘건강권’, ‘장애인 건강 보건관리’, ‘장애인 건강관리사업’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,
  -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일치시켜 시책 추진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3조는 ▲장애인 건강권 존중·보호·실현, ▲장애인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, ▲장애인에게 적정 진료 및 재활 의료 제공, ▲건강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·시행, ▲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및 건강권 인식 시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.
  - 이는 법 제4조1)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
- 1)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, 낮은 교육수준, 의료 차별, 적정하지 못한 고용·노동·주거 환경,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안 제4조는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도민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, 법 제5조2)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책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·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
  - 이는 법 제6조3)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정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연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) 제5조(국민의 의무)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3) 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4.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5.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이는 법 제7조4), 제8조5), 제9조6), 제13조7), 제15조8), 제16조9), 제17조10)에서 지방자치단체가 ▲건강검진 사업, ▲건강관리사업, ▲의료접근성 보장 사업, ▲건강교육 사업, ▲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사업, ▲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, ▲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과 경비지원, 지정 취소, 지도·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
- 4) 제7조(장애인 건강검진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사업(이하 “장애인 건강검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  
② ~ ⑦ (생략)
  - 5) 제8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,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(이하 “장애인 건강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  
② (생략)
  - 6) 제9조(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, 재활 등을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, 「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(이하 “의료기관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 
③ (생략)
  - 7) 제13조(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 
② (생략)
  - 8) 제15조(재활운동 및 체육) ① (생략)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  
③ ~ ④ (생략)
  - 9) 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  
② (생략)
  - 10) 제17조(의료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 
② (생략)

- 이는 법 제20조11), 제21조12)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지정취소를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지도·감독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□ 종합의견

-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가·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27.9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8.7%인 반면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4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- 
- 11) 제20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  1.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,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
    2.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
    3.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   4.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
   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- 12) 제21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)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이하 “장애인보건의료센터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  2.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   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,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52%인 1,401,523명이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- 따라서,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2022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이 182,835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.
- 이에,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▲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, ▲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, ▲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 경상북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